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63
------------	------

2017년 11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13일, 서영진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후의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1. 17 ~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는 사항을 ‘2019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당초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으나, 2013년¹⁾과 2015년²⁾ 각각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서울시는 동 조례를 근거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보조금으로 ’12년 62억원, ’13년 77억원, ’14년 79억원, ’15년 79억원, ’16년 91억원, ’17년 113억 1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카드결제율	44.7%	50.3%	58.8%	59.2%	62.2%	67.4%
수수료 보조금 지원 금액(시비)	미지원	62	77	79	79	91
결제금액 기준	미지원	6천원 이하	6천원 이하	6천원 이하	5천5백원 이하	법인-차등 ³⁾ 개인-6천원 이하

1) 2013.10.4. 일부개정 · 시행

2) 2015.10.8. 일부개정 · 시행

3) 2015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차등지원

▶ 상위 최우수(10%, 26개사, 1~26위) 1만원 이하 / 우수(20%, 51개사, 27~77위) 8천원 이하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액 카드결제 기피의식을 개선하여 택시 이용 시민의 소액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가 2012년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시행한 투자심사 결과⁴⁾ 동 사업에 대해 ‘향후 직접적인 보조 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다는 점, 2013년 10월 12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이미 포함⁵⁾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택시요금 카드결제율 및 카드결제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반영 및 동 조례 폐지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변화 주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선불 교통카드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신용카드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개인/법인 1.6%(3월) 개인 1.5%(10월)

▶ 중위(40%, 103개사, 78~180위) 6천원 이하 ▶ 하위(30%, 75개사, 181~255위) 미지급

4) 2012.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재정담당관-11232(2012.10.8.)

5) 카드결제 수수료 : 대당 285,809원/년(794원/대/일)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206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7년 12월 31일</u>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u>2019년 12월 31일</u> -----.